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137
----------	-------

발의연월일 : 2026. 7. 24.

발 의 자 : 강명구 · 권영진 · 조지연
김태호 · 정동만 · 조은희
성일종 · 윤영석 · 구자근
나경원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여러 차례 반복되고, 유출된 개인정보의 다크웹 등을 통한 불법유통이 확대됨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불법유통된 개인정보가 딥페이크,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등 유출사고의 2차 피해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은 유출,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유통·거래에 대한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피해 확산 방지에 어려움이 있고,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이후 조사 과정에서 자료보전 등 초기 대응수단이 부족하여 사고 원인 규명과 대응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개인정보 불법유통 행위를 처벌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불법유통을 모니터링·탐지 및 삭제·차단하도록 근거를 신설하여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조사 및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

하여 자료보전 명령, 정기적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거래 금지 및 처벌 신설(안 제59조 및 제71조)

분실·도난·유출된 개인정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구매·제공받거나 제공·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함.

나. 개인정보 불법유통에 대한 대응 강화(제59조의2 신설)

개인정보의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가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 피해 방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정보를 탐지하고 삭제·차단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수사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개인정보의 불법유통에 대한 대응을 강화함.

다. 자료보전 명령 도입(안 제63조)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의심되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여부의 확인, 원인 분석 또는 대책 마련을 위하여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사고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함.

라. 개인정보 보호 사전 실태점검 정례화(안 제63조의2)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 등에 대한 상시적 관리체계를 구축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분실·도난·유출된 개인정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해당 개인정보를 구매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2. 분실·도난·유출된 개인정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개인정보 불법유통에 대한 대응 등)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불법유통에 관한 정보(개인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집·분석

2. 개인정보의 불법유통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의 불법유통에 관한 대응 조치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를 불법유통하는 내용의 정보를 탐지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처리·운영 권한을 가진 자에게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불법유통 방지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불법유통과 관련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수사기관과 해당 정보 및 분석 결과를 공유할 수 있다.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였다고 의심되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의 확인, 원인 분석 또는 대책 마련을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존을 명할 수 있다.

제63조의2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분야 및 업무 형태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71조제9호 중 “제59조제2호”를 “제59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제59조제3호”를 “제59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59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분실·도난·유출된 개인정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해당 개인정보를 구매하거나 제공받은 자
12. 제59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분실·도난·유출된 개인정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유포한 자

제72조제2호 중 “제59조제1호”를 “제59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73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63조제5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9조(금지 행위) (생 략)	제59조(금지 행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 설></u>	<u>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u>
	1. <u>분실 · 도난 · 유출된 개인정 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정당 한 이유 없이 영리 또는 부정 한 목적으로 해당 개인정보를 구매하거나 제공받는 행위</u>
	2. <u>분실 · 도난 · 유출된 개인정 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정당 한 이유 없이 영리 또는 부정 한 목적으로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유 포하는 행위</u>
<u><신 설></u>	제59조의2(개인정보 불법유통에 대한 대응 등) ① <u>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u>
	1. <u>개인정보 불법유통에 관한 정보(개인정보를 포함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집 ·</u>

분석

2. 개인정보의 불법유통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개인정보의 불법유통에 관
한 대응조치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를 불
법유통하는 내용의 정보를 탐지
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개인정
보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처리·운영 권한을 가진
자에게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
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불
법유통 방지 및 피해 확산 방지
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
정보의 불법유통과 관련한 정보
를 보유하고 있는 관계 중앙행
정기관, 공공기관 및 수사기관
과 해당 정보 및 분석 결과를
공유할 수 있다.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① ~ ④ (생략)

<신설>

⑤ ~ ⑦ (생략)

제63조의2(사전 실태점검) ① ~

⑤ (생략)

<신설>

⑥ (생략)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였다고 의심되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의 확인, 원인 분석 또는 대책 마련을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존을 명할 수 있다.

⑥ ~ ⑧ (현행 제5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제63조의2(사전 실태점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분야 및 업무 형태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8. (생략)

9.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10.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신설>

<신설>

제71조(벌칙) -----

-----.

1. ~ 8. (현행과 같음)

9. 제59조제1항제2호-----

10. 제59조제1항제3호-----

11. 제59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분실·도난·유출된 개인정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해당 개인정보를 구매하거나 제공받은 자

12. 제59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분실·도난·유출된 개인정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영리 또는 부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59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생략) 제7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략) <u><신설></u>	<u>정한 목적으로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유포한 자</u> 제72조(벌칙) ----- ----- -----. 1. (현행과 같음) 2. 제59조제1항제1호----- ----- ----- ----- ----- ----- 3. (현행과 같음) 제73조(벌칙) ① ----- ----- -----. 1. ~ 5. (현행과 같음) 6. 제63조제5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	--

② (생 략)	<u>자</u> ② (현행과 같음)
---------	------------------------